<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2 -100호 >

건설기술인 행정처분 공고

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등을 위반한 아래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21일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1. 대상자

당사자(건설기술자)		처분내용	처분의 원인사실
성명	생년월일		
김정구	51.4.2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7. 6.~2022.10. 5.)	근무경력 거짓신고
김주성	64.11.2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7. 6.~2022.10. 5.)	근무경력 거짓신고
성주현	77.9.1.	업무정지 4개월 (2022. 7. 6.~2022.11. 5.)	근무경력 거짓신고
임병학	68.2.5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7. 6.~2022.10. 5.)	근무경력 거짓신고
구본흥	63.3.26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7. 6.~2022.10. 5.)	근무경력 거짓신고
이한철	75.2.9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7. 6.~2022.10. 5.)	근무경력 거짓신고
최민근	81.9.2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7. 6.~2022.10. 5.)	근무경력 거짓신고
김국진	71.1.2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7. 6.~2022.10. 5.)	근무경력 거짓신고
김경우	66.6.8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7. 6.~2022.10. 5.)	근무경력 거짓신고

당사자(건설기술자)		처분내용	처분의 원인사실
성명	생년월일		
김근우	66.9.15.	업무정지 12개월 (2022. 7. 6.~2023. 7. 5.)	건설기술경력증 대여

2. 법적근거

- ○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[별표 1]
- ○ 舊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[별표 3]
- ○ 舊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 [별표 2]

3. 유의사항

- ○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심판법」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(송달일)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. 기타방법

- ○ 위 공고문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(02-2110-6724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